

#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9,166,151	16,474,985
일반회계	485,738,089	14,572,143
특별회계	63,428,062	1,902,842
공기업특별회계	38,261,847	1,147,855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1,248,254	637,448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7,013,593	510,408
기타특별회계	25,166,215	754,986
주택사업특별회계	49,915	1,497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518,193	45,546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6,339,356	190,181
자활기금특별회계	1,360,190	40,806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548,307	106,44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771,096	23,133
수질개선특별회계	7,622,221	228,667
도시개발특별회계	320,222	9,607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903,680	27,110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708,035	81,24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000	75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18,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02억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